

2015. 3. 12.(목)



보도자료

2015년 3월 12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양기철 과장(☎2110-1540)
이용자보호과 문흥원 사무관(☎2110-1546) mhwons@kcc.go.kr

‘중고폰 선보상제’ 요금제 선택권 부여한다 -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유롭게 요금제 선택할 수 있게 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던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도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3. 12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중고폰 선보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원의 과징금(SKT 9.3억원, KT 8.7억원, LGU+ 15.9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기존 가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하여, 그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 중고폰 선보상제 >

- 단말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제도
- ※ '14.10.31일부터 이통 3사가 ‘프리클럽(SKT)’, ‘스핀지제로플랜(KT)’ 및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다가 SKT는 1.15일, KT 1.22일, LGU+ 3.2일자로 각각 운영을 중단
- ※ 가입자 수(3.2일 현재) : SKT 184,958명, KT 168,601명, LGU+ 206,017명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통 3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지난 1.14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통 3사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고폰 반납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간 차이도 불분명("깨짐" 및 "흠집"의 유동적·자의적 판단 가능)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일정부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다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고지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 "이용자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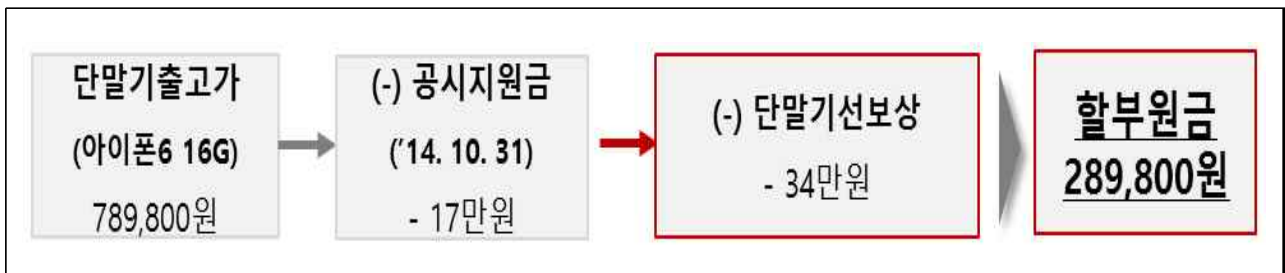
< 참고 >

‘중고폰 선보상제’ 개요

□ ‘중고폰 선보상제’란?

- 단말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제도¹⁾
- 이용자는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이외에 34~38만원 수준의 선보상금까지 차감 받음으로써 초기 단말기 구입부담(할부원금) 감소

< ‘중고폰 선보상제’를 통한 단말기 구입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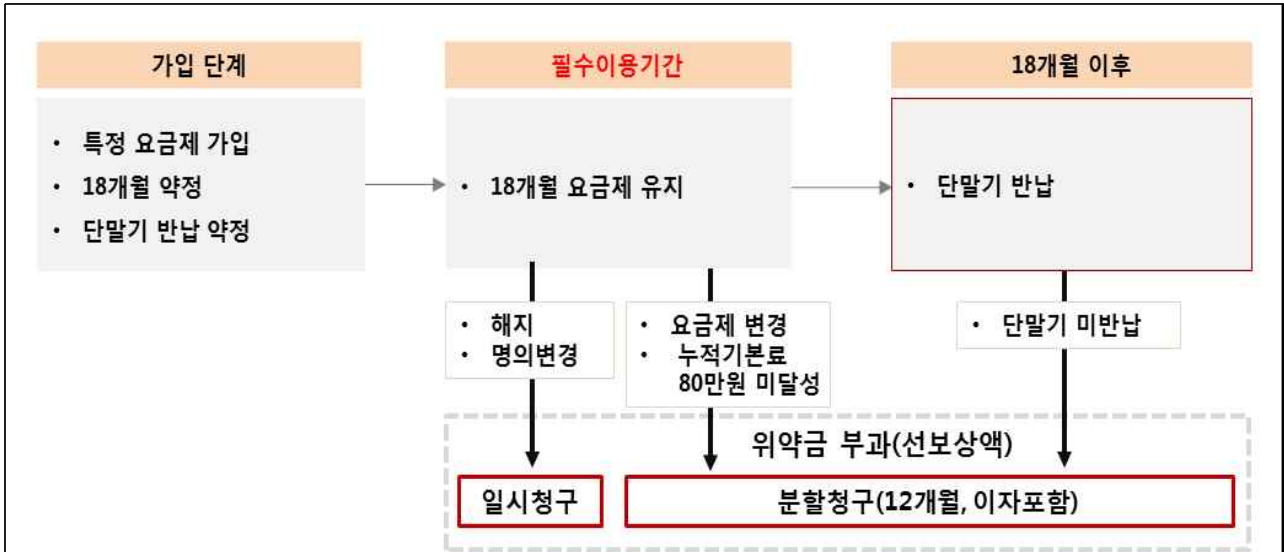


※ 18개월 동안 매월 할부원금 16,100원(289,000원/18개월)과 이자금액을 납부하다가 18개월이 되면 단말기 반납

- 이통 3사는 중고폰 선보상 조건으로 LTE62 요금제(또는 누적 기본료 80만원) 이상의 특정 요금제를 18개월 이상 유지토록 하고,
 - 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휴대폰 반납이 불가피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선보상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

1) '14.10.31일부터 이통 3사가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및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다가 SKT는 1.15일, KT 1.22일, LGU+ 3.2일자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임

< '중고폰 선보상제' 운영 프로세스 >



- ① 가입 단계 : 선보상제 이용을 위해서는 특정 요금제를 18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도록 계약 체결
- ② 필수이용기간 : 18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선보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분할 청구
- ③ 18개월 이후 :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손·분실시 단말기 반납이 불가능하여 선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12개월간 분할청구

< 중고 단말기 반납조건 >

SKT 「프리클럽」	KT 「스핀지제로플랜」	LGU+ 「제로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등급(미사용 및 구성품 완비 단말기) ○ A등급(사용흔적 있으나 외관균열/깨짐 없고 도색이탈 및 변색이 심하지 않은 상태) ○ B, C등급 반납 불가 (A/S 처리 후 반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가능, 액정 미파손시 모두 반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미사용 및 구성품 완비 단말기) ○ B등급(본체 및 액정 흠집 있음) ○ C, D등급 반납 불가 (A/S 처리 후 반납 가능)